

## 생활기초편 / Ⅲ. 건강관리 / 1. 건강진단

센다이시에 거주 중이신 분은 센다이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: SenTIA 국제회사업무 HP [\[탐 페이지>외국어정보>건강·의료>](#)

[건강진단\(시민 건강진단\)](#) (일·영·중·한)

## 생활기초편 / Ⅲ. 건강관리 / 2. 병원

일본에는 설비가 갖추어진 대규모 병원(종합병원) 과 집 근처의 소규모의 진료소/병원이 있습니다. 몸 상태가 안 좋다면, 우선은 근처의 진료소/병원에 갑니다.

※종합병원은 소개장이 없으면 진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●진료소 / 병원에 가기●

①우선은 진료소/병원에 전화를 합니다. (필요시에는 예약을 합니다.)

②건강 보험증(※) 을 가지고 진료소/병원에 갑니다. 건강 보험증을 접수처에 전달합니다.

※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건강 보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전액 지불 해야만 합니다.

※초진이나 매달 첫 진료를 받을 때에는 접수처에 건강 보험증을 제출합니다.

③초진일 경우에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. 기입이 끝나면 접수처에 전달합니다.

문진표...환자의 몸상태를 알기위한 질문지

**다언어판 문진표 다운로드** → <https://www.kifjp.org/medical/>

(카나가와 국제교류재단과 국제교류 하티코난다이에서 23 개 언어로 작성했습니다.)

④이름이 불리면 진료실에 들어가 진찰을 받습니다.

⑤진료비를 지불합니다. 약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습니다.

⑥처방전을 받으면 약국에 가서 처방전과 약을 교환합니다.

그때 약값을 지불합니다.

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의사 및 스텝이 있는 병원이나 치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지원,

병원 예약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분은 [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\(TEL : 022-224-1919](#)

[Email: tabunka@sentia-sendai.jp](mailto:tabunka@sentia-sendai.jp))로 연락 바랍니다.

### ●보험증/건강보험에 관하여●

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의 보험에 가입합니다. 가입하면 보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에 갔을 때,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만 합니다.(가입한 경우에는 30% 개인부담)

①**사회보험(피고용자 보험)** ...일을 하고 있을 경우 고용주가 수속을 합니다.

여러분의 보험료는 급여에서 지불됩니다.

②국민건강보험...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가입합니다. 각 구청 창구에  
재류카드와 여권과 은행 캐쉬카드를 가지고 가입수속을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SenTIA 국제화사업부 HP :

[탐 페이지 > 외국어정보 > 생활 > 국민 건강보험 안내서](#) (일·영·중·한)

## 생활기초편 / IV. 자녀 / 1. 임신·출산·아기

### ●임신했다면●

각 구의 보건복지센터나 각 종합지소 보건 복지과에 임신 등록서를 제출합니다.

①모자 건강수첩이 발급됩니다. (일·영·중·한·포르투갈·타갈로그·그 외 5 개 언어)

· 임신 중의 경과·아기의 발육 등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.

②임산부 건강진단 조성권 등이 있는 별책(임산부편)이 발급됩니다.

· 이 조성권을 사용하여 등록 의료기관에서 임산부 건강진단을 최대 14 회 받을 수  
있습니다.

· 출산 후에는, 등록 의료기관에서 임산부 건강검사를 최대 2 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③보건 지도가 있습니다.

· 보건복지센터에서는 임산부나 그 가족에게 어머니/부모교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### ●아기가 태어났다면●

14 일 이내에 구청에 출생신고를 해주십시오. 출산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  
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, 출생신고와 함께 각 구의 보건복지센터 보험연금과, 미야기  
종합지소 보험연금과, 아키우 종합지소 보건복지과 창구에 신청합니다. 피고용자 보험  
(사회보험)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에 신청합니다.

또, 가능한 빨리 모자 건강수첩 별책(임산부편) 에 들어있는 출생 연락표를 기입한 후,  
보건복지센터에 보내주십시오. (영아 건강진단 진찰표, 예방 접종권이 붙어있는  
별책(영유아편) 이 송부됩니다.)

그 외에 외국인 부부(부친이나 모친 중 한쪽이 일본국적인 경우를 제외) 사이에서 아기가  
태어난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득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. 이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30 일  
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관서에서 해주십시오. 또한, 출생일로부터 60 일  
이내에 일본에서 출국할 경우에는, 재류자격취득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.